

자연공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채택의 건

의안 번호	345
----------	-----

발의년월일 : 1995. 3. 7.

발 의 자 : 오진택의원외 2인

1. 제안 이유

- 설악산 국립공원의 과다 지정에 대하여 개원이후 의회에서는 공원구역의 일부제척 및 공원구역 변경을 수차에 걸쳐 내무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한 바 실현되지 않아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 내무부 공고 제1995-17호('95. 2. 23)로 자연공원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공고됨에 따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일부 불합리한 규제 조항에 대해 개정 의견을 제출코져 함.

2. 주 요 골 자

- 자연공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별 첨

自然公園法 改正(案)에 對한 意見

1. 背 景

가. 설악산 국립공원은

- 1970. 3 건설부공고 제28호로 174km²가 지정되었고,
- 1972. 10 건설부공고 제77호
- 1978. 10 건설부공고 제100호
- 1984. 12 건설부공고 제577호로

설악산 국립공원 총면적은 377. 7km²로 확장 변경되었으며
그중 속초시 지역은 55. 8km²로서
속초시 전체면적 104km²의 53. 2%에 해당되며,

특히, 노학·도문·설악동 구역 12. 85km²는
설악산의 진입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발 10~30m 이내의 구릉지역으로 기존 취락형성 및 농경지로
이용되는 지역임에도 자연경관이 수려하다는 이유로
공원으로 지정되므로서

공원 구역내 거주하는 589세대 2, 066명의 주민들이
주택 증·개축 등이 어려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

공원구역 제척을 갈망하여 왔으나 상금까지 공원구역에서
제척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 1) 노학동 척산지구는 자연부락 단위의 취락지역임에도 불구하고

’72.10 과 ’78.10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없이 4.4km를 공원구역으로 확장. 국립공원내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됨으로써 기존 주택의 증·개축 등이 불가하여 73세대 264명의 주민은 공원구역에서 제척하기를 갈망하고 집단지구로 지정된 이후 도시발전으로 사실상 공원구역중 집단시설 지구로서의 존치 가치가 없는 실정으로

- 2) 도문지구 6.83km는 주거밀집지역이 공원구역중 취락지구로 협소하게 고시되어 448세대 1,554명의 지역주민이 취락지구 확대 또는 공원구역에서 제척되도록 희망하고 있다.

- 3) 설악지구는 68세대 248명이 거주하는 1.62km가 자연공원법에 의한 규제로 관광지의 시설 현대화가 불가하여 미관저해 및 관광객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등 과다한 면적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됨으로써 각종 도시계획시설 공간의 확보 뿐만 아니라, 도시발전의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공원구역의 일부제척을 수차에 걸쳐 건의한바, 실현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나. 그러나,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일부 불합리한 규제완화를 위하여

내무부 공고 제1995-17호(’95.2.23)로 자연공원법 개정(안) 입법예고가 공고됨에 따라 본 법안 개정취지에는 적극 호응 하지만

- 1) 불합리하게 설정된 공원 구역경계 재조정 근거 마련에 있어
 - 10년마다 공원구역 타당성여부 검토, 공원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축소변경 허용
- 2) 용도 지구별 허용행위 기준 완화에 있어
 - 집단시설지구에 기존 적법건축물 개축·재축 및 수선허용등

일부 부적합한 내용에 속초시민의 뜻과 공원구역의 편입된 주민의 뜻에 따라 속초시의회에서는 별첨과 같이 의견을 제출한다.

2. 主要内容：항목별 의견 (별첨)

項 目 別 意 見

원	영	의	견	이	유
[] 시민공원법					
제13조 (공원계획의 변경등)					
1) 공원계획의 변경은 공원계획의 건설공사에 따라 행한다. 다만, 국토건설총원계획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건설총원계획회의에서 의결된 도시계획계획에 의한 변경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은 공원관리청이 다른 절차없이 이를 행할 수 있다.					
2) 공원계획은 작성된 날로부터 10년마다 그 내용상 변경을 필요로 하여 하위공원계획의 변경에 있어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시민공원법					
제13조 (공원계획의 변경등)					
(1)					
(2) 공원계획은					
i) 공원의 지정 또는 구역변경한 날로부터 ii) 5년마다 공원구역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iii) 공원으로 준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지명지치단체장이 신청할 경우 축소변경하여야 한다.					
i) 현행법에는 경계 세조정시현의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 ii)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제4항의 규정에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여부를 검토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원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므로 기간 조정(10년 → 5년) iii) 지방자치 시내에 따른 변화하는 지역 실정에 자치단체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역의 자율성과 지치능력이 보장되어야 할 것임.					

인

행

제16조 (용도지구)

(1) 대우부동산권·토지시 부는 군수는
공단의 효율적인 이용과 이용을 토지
에게 이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
지구를 공단계획으로 결정한다.

1. 자연보존지구 : 자연보존 강대
기 위치성이나 지리적 위치나
인공·식물 부는 자연기념물등이
있거나 자연경관이 특이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곳

2. 자연환경지구 : 자연보존 지구·
취락지구·전단지시지구와 제외인
지구

3. 취락지구 : 주민의 취락생활 및
농경지 부는 농어민의 생활 및
지부 유지·전단지시지구와 제외
지구

4. 전단지시지구 : 공단계획지에
내인 권역제 공 단공원의 보호·
관리할 위하여 공단계획에 전단
지 되었거나 전단지화 되어야 할
곳

(2) 제1항의 규정에서 제외인 용도지구
안에 이 용행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이 용 행 위
1. 자연보 존지구	1. 외출입구 부는 자연보존성 원인이나 보 인경도는 행위 2. 조수인의 공단계획의 설치 및 지인

의

전

이

유

제16조 (용도지구)

①
.....
.....
.....

1. 자연보존지구 :
.....
.....
.....

2. 자연환경지구 :
.....

3. 취락지구 :
.....

4. 전단지시지구 :
.....
.....

(2)
.....
.....

구분	이 용 행 위
1. 자연보 존지구	1. 2.

인	행	의	견	이	유
	3. 구 시 시설 · 동식 시설 · 명보 보 시설 · 구원보호, 시설을 오로지 이 시설이 아니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최후의 시설의 설치 4. 원원보지사를 거쳐 문화체육 부 장관의 추천이 있는 사람 의 복원비, 시권 경내에서 의 복구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5. 시민보조성내의 원시성이나 주요인 지역환경을 현저히 애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선담법에 의한 조림 · 육림 및 임도의 설치	3. 4. 5.			
2. 시민원 경지구	1. 시민보조지구에서의 이용 행위 2. 시보 (인원시보)를 민간나 민간에서 아니하는 1차적인 행위, 주시조성행위 3. 민선하지 아니하는 공원시설 의 설치 및 행위 4. 조림 · 육림 · 방제 기타 국방 성, 국민경제성, 공익상 필요 한 조림의 행위 또는 시설 의 설치 5. 공원지정 이전의 기존 건축 물로서 시민공성과 조화되도 록 이 내부부령이 성하는 내부의 건축 · 개축 · 세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2. 시민원 경지구 1. 2. 3. 4. 5.			
3. 취락지 구	1. 시민보조지구와 시민원경지 구에서의 이용행위	3. 취락지 구 1.			

현	행	의	견	이	유
3. 농산물·임산물·수산물·축산물 의 건조·포장등의 가공시설 4. 농산물·임산물·수산물·축산물 의 운송·판매장등의 판매시설	(2) 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경사구내의 공원지정 이전의 기준건축물에 대한 건축·개축·세 주 및 내부시설의 철거가 허용되 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공원 계획에 의하여 정비 또는 철거의 내 容으로 확정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개축·세축이나 내부시설 의 철거를 할 수 없다.	(2)	3. 4.		
1. 기준건축물의 연면적의 범위인 에서의 계속 및 세축과 다음 기준 에 의한 건축 가. 시설종류 기준 시설종의 면적 범위이며 100제곱미터이하 나. 시설종류 기준 지하층의 면적 은 50제곱미터 이하이며 2. 주거용 건축물의 내부시설면적 인면적 30제곱미터이하인 내부 시설의 철거		1.			
		가.			
		나.			
		2.			

